

부산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19가단3375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강진영, 서재옥, 이석재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3. D

피고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권인철

변 론 종 결 2022. 4. 7.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피고 C는 15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4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22.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C는 15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B은 위 돈 중 4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8. 2. 1. 체결한 매매예약은 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 비 적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5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8. 2. 1. 체결한 매매예약은 132,583,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13. 12. 2. 3,500만 원, 2014. 1. 28. 4,500만 원, 2014. 8. 16. 2,000만 원, 2014. 10. 10. 500만 원,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2014. 4. 15. 4,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C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에게는 위 돈 중 4,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피고 C는 차용금 1억 5,000만 원, 피고 회사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차용금 4,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5. 18.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는 2022. 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대여금 청구를 처음 추가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위와 같이 판단한다).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3,000만 원은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회사는 2018. 2. 1. 피고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전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가 2018. 4.경 또는 6.경에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가등기가 된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 11. 6.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D에 대한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다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과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한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2018. 4. 또는 6.경에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D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1) 이 사건 건물 전체 중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19. 11. 6.이 사건 건물 전체 중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물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21. 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로 피고 D에 대한 소를 변경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8. 20. 추가된 이 사건 건물 전체 중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에 관한 채권자 취소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피고 D은 같은 취지로 기각을 구하고 있으나, 제척기간 도과는 소송요건에 관한 사항이다).

2) 이 사건 건물 전체 중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 전체 중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제501호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L(중복)] 절차에서 위 부동산은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저당권자들이 배당을 받았고, 그 외에 공탁금이나 잉여금이 남아 있지 않아, 위 배당절차는 종결되었다.

(3) 피고 D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 을다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로서의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다만 수익자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지 못하고, 추후에 배당받을 가능성도 없다면, 부당한 이득을 보유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 그와 마찬가지로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매절차에서 매각을 원인으로 직권 말소되었고, 수익자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른 부당한 이득을 보유할 가능성이 없다면, 채권자로서는 원상회복으로서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및 가액배상은 물론 그 원인인 매매예약의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직권 말소되었고, 피고 D이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였으며, 추가로 배당받을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 중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 원고로서도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손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의 소를 통해 피고 회사의 책임재산으로 회복시킬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

별지